

강원관광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명칭) 본원은 강원관광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(이하 “본원”)이라 칭한다.

제 2 조 (설립목적) 본원은 대학이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적극 봉사함으로써 교육 기회 평등과 평생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위치) 본원은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439번지 강원관광대학교(캠퍼스)내에 둔다.

제 2 장 조 직

제 4 조 (원장) ① 본원은 원장을 두며 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중에서 겸임으로 학장이 임명한다.

제 5 조 (교직원) 본원에 필요한 교직원을 두고 원장의 명을 받아 교학업무를 관장한다.

제 3 장 자문 위원회

제 6 조 (구성) ① 본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자문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.

제 7 조 (임기)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 8 조 (기능)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자문한다.

1. 교육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설치과정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
4. 학습인원 및 학습비에 관한 사항
5.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6.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
제 4 장 학 사 운 영

제 9 조 (입학시기) 입학시기는 각 과정별 일정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.

제 10 조 (학습기간) 본원의 학습기간은 각 과정에 따라 별도로 정하고 학습자는 수시로 모집한다.

제 11 조 (학습일수) 본원의 주 학습일수는 교과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.

제 12 조 (지원자격) 본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, 특수한 과정 또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력·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 13 조 (선발방법) 본원의 학습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설치과정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 14 조 (설치과정 등) ① 본원의 설치과정 및 학습인원은 <별지 1>의 설치과정 편성표와 같다.

제 15 조 (학습비) ① 본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<별지 3>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학습비는 과오납 또는 폐강, 기타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16 조 (수료 및 수료증 교부) ① 본원의 수료자는 소정의 설치과정의 교과목을 70%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.

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 <별지 2>을 교부할 수 있다.

제 5 장 학습자 활동 및 포상

제 17 조 (자치회) ① 학풍을 진작하고 학습자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과정마다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자치회는 각 과정마다 회장과 총무 각 1인을 둔다.

제 18 조 (학습자 활동의 금지) 학습자는 본원 학습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, 집단행동· 농성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.

제 19 조 (포상) 학습 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게는 수료시 포상할 수 있다.

제 6 장 회 계

제 20 조 (회계년도) 본원 회계년도는 강원관광대학 회계년도에 따른다.

제 21 조 (예산편성) 원장은 매년 1월 중 다음해 예산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자문위원회를 거쳐 편성한다.

제 22 조 (수입원) 본원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학습비
2. 강원관광대학 보조금
3. 위탁훈련 지원금(위탁훈련시)
4. 기타 수입

제 23 조 (회계집행) 본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원의 원장이 관장한다.

제 24 조 (시행세칙)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시행 세칙은 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원칙은 2003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< 별지 1 >

교육과정 편성표

변 경								
설치과정	세부과정명	정원	교육 대상	교 과 목 (주당시간)	이수 시간	교육 기간 (주)	관련학과	학습비
소 계	개 세부과정	명		과목				
소 계	개 세부과정	명		과목				
소 계	개 세부과정	명		과목				
합 계 (00과정)	개 세부과정	명		과목				

- ▶ 각 세부과정의 교과목별로 학점·이수시간 표시 (15시간 이상 1학점 부여)
 - 교과목명은 가급적 표준교과목으로 설정하며, 실습 과목은 이론과목 시간의 2배 고려
- ▶ 세부과정 신설은 대학 정규과정의 관련학과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 (학습기간은 총학습기간으로서 2주이상으로 편성)
 - 대학 정규과정 관련학과의 교육과정표(또는 강의계획서) 등 확인자료 첨부
- ▶ 학습대상은 일반성인,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함

< 별지 2 >

제 03-○○○호

수료증

성명 :

생년월일 : 년 월 일

위 사람은 본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

○○○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

2003 년 3 월 일

강원관광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원장 ○○○ (인)

위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

강원관광대학 학장 ○○○ (인)

수입 · 지출 예산서

1. 수입

(단위 : 원)

과 목			예산액	산 출 근 거
관	항	목		

2. 지출

(단위 : 원)

과 목			예산액	산 출 근 거
관	항	목		

강원관광대학 평생교육원 수강신청서

2003년 1학기		접수 번호	
과 정 명			
지 원 자	성 명	한글	
		영문	
	주민등록번호		
	주 소		
	직 장 명		
연 락 처 ☎	집		
	휴 대 폰		
	e-mail		
<p>본인은 귀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를 수강하고자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0px;">2003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50px;">지원자 _____ (인)</p> <p style="font-size: 1.2em; margin-top: 20px;">강원관광대학 평생교육원장 귀하</p>			

※ 강좌 등록은 신청서를 직접 오셔서 제출하거나 전화, FAX, e-mail첨부 파일 중 선택하여 보내주시고 수강료는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국민은행 308- 25 - 0003 - 00000

강원관광대학교 입학정원 및 교수현황

단과대학	계열 및 학부(과)	입학정원		교수현황	비 고
		2003			
	어학계				
	취미계				
	전산계				
	계				
	편제정원				

제 2003 - 호

교육비납입증명서

신	① 성 명		② 주민등록번호	
청	③ 주 소			
인	④ 교육 과정			

교육비납입내역

납부년월일	기간	교육비의내용	금액	비고
계				
사용목적	제출용			

위와 같이 교육비를 납부 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03 년 월 일

신청인 : (인)

위와 같이 교육비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2003 년 월 일

강원관광대학평생교육원장